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김태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72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3월 25일
발 의 자: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김기덕, 김제리, 김평남,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이광성, 이광호, 최웅식,
황규복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을 통한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예술인 창작수당에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예술인 창작수당에 대한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창작수당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취약예술계층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예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신청·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203250000000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태수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2.03.25

회신일 : 2022.04.06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6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6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상인원 및 창작수당 지급금액의 규모 그리고 지급방법과 지급횟수,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총7만여 명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5

e-mail : kjh0123@seoul.go.kr